



제 40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619호)

2023.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연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어기술 교육훈련 사업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12. 2.

3. 회 부 일 : 2022.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1. 영어기술 교육훈련 사업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사업 중 수산업인·어촌청소년·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의 대상으로 어촌청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수산업인·어촌청소년·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라.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하는 ----- -----.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 년·여성 ----- ----- ----- 다.·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조제5호나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어촌청소년·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을 ‘교육훈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규정에 어촌청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은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 지역의 청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복지의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청년어업인의 유입·정착 확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¹⁾.

참고로, 동일 취지로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964, 정부제출)²⁾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

1)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업인의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2)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② 청년 대상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③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④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로 구분하여 법률안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사 중인 상황임.

문 의 처

02)6788-5424

법」 등 5개 법률의 지원 대상에 청년을 일괄적으로 추가하여 농어촌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964, 정부제출) 검토보고서 참고)

<각 개정안 주요 내용>

연번	법률명	소관부처	개정내용
1	복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역량 강화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의 실시 대상에 청년 추가
2	복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가
3	경제활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농촌청년 추가
4	교육훈련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대상에 어촌청년 추가
5	경제활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미래 수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육성 및 지원 대상에 청년수산업인 추가

※ 참고자료

□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본예산	증감	%	
◇ 합 계	32,870	34,905	2,035	6.2	
I 청년어업인 유입	10,840	12,095	1,255	11.6	
수산사업창업투자지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4,500	5,250	750	16.7	· 수산분야 창업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육성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계고교특성화)	2,151	2,151	-	전년동	·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승선실습, 현장 실습훈련, 실습상비 등 지원(9개교)
어선청년임대	-	450	450	순증	· 청년에게 어선을 임대해주고 임대비 일부(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2022년 전남 전북 지역 어선 10여척 임대 지원
귀어귀촌활성화지원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귀어인의 집 귀어학교 개설 등)	4,056	4,111	55	1.4	·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정보제공,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도 시민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통해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후계인력장학금)	133	133	-	전년동	· 수산계 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
II 초기 정착단계	22,030	22,810	780	3.5	
① 경영지원	3,340	3,250	△90	△3.7	
수산전문인력 양성(R&D)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 스마트수산양어기술센터, 미래수산물안전센터)	3,000	2,910	△90	△3.0	·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치환경 스마트 양식기술, 미래 수산식품 사 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영역과 수산분야 소향 을 겸비한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경영대학과정)	340	340	-	전년동	· 수산계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화된 어업인 교육과정 운영하여 수산분야 인재 및 전문경영인 양성(8개대학)
② 기술(교육)지원	712	550	△162	△22.7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양수산경영기술교육)	144	144	-	전년동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 기술정보의 습 득 및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어촌 현안문제 해소 도모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경영인교육)	316	226	△90	△28.5	·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어 기반 조성 자금 및 전문 교육훈련 지원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창업어가멘토링)	252	180	△72	△28.6	· 수산업 분야 신규 창업어가 및 귀어민의 안정적인 영여정착 도모
③ 생계·정착지원	1,560	2,552	992	63.6	
귀어귀촌활성화지원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	-	840	840	신규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통해 안정적 인 어촌정착 지원 및 고령화 해소
청년어촌정착지원	1,560	1,712	152	9.7	· 청년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어업인에게 최 장 3년간 최대 월 1백만원 정착금 지원을 통해 어촌 고령화 해소
④ 장비·시설지원	-	-	-	-	
⑤ 융자지원	16,418	16,458	40	0.2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자보전)	11,325	10,843	△482	△4.3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비용 지원(융자) * 최대2~3억원, 연리1~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이자보전)	5,093	5,615	522	10.2	· 귀어귀촌을 희망자에게 귀어 창업과 주택구입 대출(융자) 지원 을 통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0.75억원, 연 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III 정착 후	-	-	-	-	